성형

작성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1)]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1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사고로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거나 수술 등에 의한 흉터가 남은 경우 이를 제거하여 피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은 물론 환자 자신이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사고로 인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성형수술은 신체상태를 사고 이전 상태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경우이거나 상처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며, 사고 이전 상태보다 더 양호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미용 성형수술이나 쌍꺼풀 수술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부에 흉터가 남으면 관절이 구축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거나 감각을 느끼는 역할 등), 보기에 흉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흉터제거 수술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만이 아닌 신체 모든 부위에 해당하며, 특히 요즘은 자기 만족 내지 콤플렉스를 갖지 않기 위한

1) 경력 28년의 손해사정사로 삼성화재(주)를 거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정전피해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원 전문상담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스펀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자동차사고 이렇게 하라”,“보험가입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비노출부위에 대해서도 흉터 제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흉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 피부조직이 안정된 후 실시하게 된다.

대개 상처가 아문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흉터제거수술을 하게 된다.

2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광범위한 부위의 피부가 괴사한 경우 다른 곳의 피부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옆부분의 피부조직을 확장하여 흉터를 덮는 방법도 있으며, 크지 않은 흉터의 경우 피부를 깍아내는 박피술을 하는 방법도 있다.

흉터 제거 성형수술은 이러한 수술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의 수술에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2~3회의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흉터제거 수술의 소요 비용은 진찰료(초진 및 통원시의 진찰 포함), 수술을 위한 검사료(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마취료, 수술료, 투약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구성되며, 입원이 필요할 경우 입원료가 추가된다.

이들 비용은 의원으로부터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비싸지며, 순수한 수술료의 경우(진찰료, 검사료, 마취료, 투약료, 주사료, 처치료를 제외한 순수한 수술료만을 말함) 얼굴 부위는 센치당 8~30만원, 기타 부위는 6~15만원 정도 한다.

3 미성년자의 성형수술

육체적 성장을 다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흉터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은 육체적 성장을 다 한 후, 나중 적당한 시기에 흉터제거 수술을 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성장을 다 한 성인의 경우 상처가 아물어 피부조직이 안정되면(사고일로부터 대개 6개월 정도 경과하면) 흉터제거 수술이 가능하지만 육체적 성장을 다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미리 흉터제거 수술을 하게되면 나중 성장한 후 다시 수술을 해야 하거나, 수술후 성장에 의해 피부가 당겨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성장을 한 후 흉터제거 수술을 하는 것이다.

신체적 성장을 다 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16~17세 정도 나이면 충분하다.

미성년자의 흉터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중 실제 수술비를 보상받는 방법도 있고, 나중 소요될 금액을 예상하여(의사의 향후치료비 소견 등에 의해) 미리 금전으로 보상받는 방법도 있다.

나중 소요될 비용을 미리 예상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성형수술비에 있어서는 수술하는 때까지의 소요기간의 이자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4 특수 부위의 성형수술

흉터를 제거하는 수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특수한 기능 또는 미관을 유지해야 하는 부위의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사고로 코, 입, 귀 등의 형상이 일그러지거나 보기 흉하게 변한 경우, 눈썹이 없어진 경우,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된 경우,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원래 상태에 가깝게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치료비로써 보상받아야 하며,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거나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보상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5 흉터의 장해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대개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음)일 뿐 흉터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아스팔트 도로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가시지 않는 경우 등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흉터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면 잘 보상하지 않는다.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